

1. 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(안 제27조의2, 별지 제14호의2서식)
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,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조치 완료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”를 각각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”를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인증분야”를 “자격분야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인증시험”을 “자격시험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하는 자격증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의2(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.	제27조의2(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<u>방재전문인력 인증서</u>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	2. ----- <u>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</u> ----- ----- --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58조제3항의 <u>방재전문인력 인증서</u> 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다.	② ----- <u>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</u> ----- -----.